

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와 보험계약의 효력

이성남 |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검사역

1. 머리말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고지의무인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법에서 특별히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동질의 위험을 지닌 보험단체 구성의 필요와 보험계약의 선의성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화재보험계약의 해지관련 사례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와의 관계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

주식회사 甲은 '97. 3. 28 보험회사와 그 소유건물인 ①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1계간 250평에 대하여 금 2억5천만원 ②경량철판판넬조 패널층 1계간 8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금 6천6백만원 ③이 사건 건물 내 기계일체(총8점,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대하여 금 2억5천만원 ④이 사건 건물 내 집기비품일체에 대하여 금 5백만원 ⑤이 사건 건물 내 동산일체에 대하여 금 1억5

천만원 ⑥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3계간 136평에 대하여 금 1억5천만원 ⑦위 건물 내 집기비품일체에 대하여 금 일천만원 ⑧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1계간 8평에 대하여 금 6백만원으로 보험기간을 '97. 3. 28부터 '98. 3. 28까지로 정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료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97. 6. 7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건물 및 그 안에 있는 위 ②내지 ⑤기계 물건이 전소하였고, 그 화재 원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120mm 압출기의 히터 과열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 기계는 甲이 '94. 12월경 구입하여 甲의 지방소재 공장에 설치하였다가 '97. 1. 9 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손되자 丙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재설치한 것임에도 甲은 丙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기계를 '97. 2. 13 위 丙으로부터 합계 금 2억3천만원에 구입한 신품이라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계의 가치를 감정받아 보험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보험회사는 甲에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가?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하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법에서 특별히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동질의 위험을 지닌 보험단체 구성의 필요와 보험계약의 선의성 때문이다.

3. 생점 검토

가. 서설

제시된 사례를 보면 첫째,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화재사고의 경력과 보험가액을 속이고 고지하지 않은 것을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독립된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일부에 대하여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여부

우리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2조 제3항에 의하면 중복초과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계약자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상법 제649조의 단서가 추가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다툼은 일단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서 내용 중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를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¹⁾

사견으로는 이러한 이의 제기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증권의 소지는 보험계약자가 소지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쉽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판촉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보험상품 등은 대다수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해지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단체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증권이 1매만 발행되므로 보험증권은 항상 보험계약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이 외에도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54조)

(2) 보험자의 해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최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또한 보험계약자가 고지 및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동 제652조, 동 제653조)

(3) 보험계약의 일부해지(일부무효의 법리 적용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사유가 인정된 일부에 대하여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²⁾ 하여 보험계약의 일부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 학계의 견해

학계는 보험계약의 일부해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단일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등 위반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장기적·계속적 관계인 보험계약관계에 중대한 위험신호라 볼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등 위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³⁾

(라) 사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일부해지의 문제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목적물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통합하여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의 분할이 가능하고 일부분에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일부해지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의 분할이 불가능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지의 경우는 보험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보다는 경미한 하자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137조의 일부무효의 법리는 일부해지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와의 관계(민법규정의 중복적용 문제)

(1) 문제의 소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동시에 사기에 해당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이외에 민법 제110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중복적용설

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그 근거·요건·효과에 있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상법이 다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⁴⁾

(나) 사기에 관한 민법적용 부정설

상법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⁵⁾

(다) 착오·사기 구별설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착안하여 착오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없으므로 민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적용하자는 견해이다.⁶⁾

(3) 판례

대법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⁷⁾하여 민법의 적용을 인정한다.

(4) 검토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적 용설에 의하면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동시에 제651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민법 중복적용 부정설에 의하면 상법 제65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사견으로는 사기와 착오의 경우를 구별하여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중복적용을 부정하되, 사기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자가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

소하려면 사기의 요건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⁸⁾

4. 사례의 해결

제시된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경력과 보험가입금액을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야 하는 것인데, 제시된 사례의 경우에는 초과보험계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회사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할이 가능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일부에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것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내용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는데 보험목적물의 화재경력 및 실제가치부분은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주)

1) 김성태 보험법강론 356면

2) 대법원 1999.4.23. 선고, 99다8599판결

3) 김성태 보험법강론 336면

4) 채이식 상법강의(하) 465면

5) 서돈각·정완용 상법강의(하) 379면

6) 양승규 보험법 제3판 129면, 손주찬 상법(하) 532면, 정찬행
상법 강의(하) 514~515면

7)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1165판결, 분쟁조정결정 사건
92-20(이행지급보증보험)

8) 분쟁조정결정 89-03 ('89.7.20) 생명보험분쟁